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84
----------	-------

제출년월일 : 2023. 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청소년이용시설의 청소년우선권 보장으로 청소년시설 기능 강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7조(사용료등) 제1항 관련 [별표] 일부 내용 개정: 청소년시설 중 독서실
사용료 상한에 대한 아동·청소년과 성인 간 차등 적용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4. 20. ~ 5. 10.

나) 제출의견 : 2건 (미반영)

- 독서실 사용료 인상 반대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해당없음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동의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2023년 제3차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6) 제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2023. 5.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사용료등)”을 “(사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료등””을 ““사용료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료등을 납부”를 “사용료 등을 납부”로, “사용료등을 반환”을 “사용료 등을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료등”을 “사용료 등”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1.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 사용료	대 상	1 회 사용료	월 사용료 상한(1시간 기준)						비 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체육관	어린이	1,300	5,200	10,400	15,600	20,800	26,000	31,200	
	초·중·고생	1,800	6,400	12,800	19,200	25,600	32,000	38,400	
	대학생, 성인	2,500	8,800	17,600	26,400	35,200	44,000	52,800	
헬스장	고등이하	2,000	8,500	17,000	25,500	34,000	42,500	51,000	
	대학생, 성인	3,000	12,500	25,000	37,500	50,000	62,500	75,000	
독서실	아동청소년	500	11,000원 (월간 사용료)						
	성인	5,000	110,000 (월간 사용료)						
시설대관	200석 이내	25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						기본 3시간
	300석 이내	33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						
	400석 이내	45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0						
비고	<p>1. 체육관은 수영장, 탁구장,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을 제외한 체육시설임</p> <p>2. 시설대관은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의 사용료임</p> <p>3. 사용료 할증</p> <p>1) 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의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p> <p>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p> <p>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 (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p>								

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구 분	강습료 대 상	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						비 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외국어	초·중·고생, 어린이	33,000	45,000	56,000	67,000	78,000	90,000	
	대학생, 성인	39,000	56,000	73,000	92,000	108,000	120,000	
예체능	초·중·고생, 어린이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대학생, 성인	39,000	61,000	73,000	91,000	106,000	118,000	
정보·과학	초·중·고생, 어린이	33,000	45,000	56,000	67,000	78,000	90,000	
	대학생, 성인	39,000	56,000	73,000	92,000	108,000	120,000	
취미·교양 ·문화 등	초·중·고생, 어린이	22,000	33,000	45,000	56,000	65,000	72,000	
	대학생, 성인	28,000	39,000	50,000	64,000	75,000	84,000	
상담	초·중·고생, 어린이	6,000	12,000	18,000	24,000	30,000	36,000	
	대학생, 성인	12,000	24,000	36,000	48,000	60,000	72,000	
	각종 심리검사	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42,000						
비 고	<p>1. 프로그램 영역 구분</p> <p>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취미·교양·문화 등 : 외국어, 예체능, 정보 과학 및 상담 분야 등을 제외한 영역 5) 상담 : 개인·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p> <p>2. 강습료 할인</p> <p>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p> <p>3.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p> <p>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사용료등) ① 구청장은 별 표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u>사용료 등</u>”이라 한다)를 정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u>사용료등을 납부</u> 받은 후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u>사용료등을 반환</u>하여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시설 이용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u>사용료등을</u>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등을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p> <p>1. ~ 7. (생략)</p>	<p>제7조(사용료 등) ① ----- ----- ----- “<u>사용료 등</u>” ----- ----- -----.</p> <p>② ----- <u>사용료</u> <u>등을 납부</u> ----- ----- ----- <u>사용료 등을 반환</u>-----.</p> <p>③ ----- ----- ----- <u>사용료 등</u>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별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1. 사용료

(단위 : 원)

사용료 구분	대 상	1 회 사용료	월 사용료 상한(1시간 기준)						비 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체 육 관	어린이	1,300	5,200	10,400	15,600	20,800	26,000	31,200	
	초·중·고생	1,800	6,400	12,800	19,200	25,600	32,000	38,400	
	대학생, 성인	2,500	8,800	17,600	26,400	35,200	44,000	52,800	
헬 스 장	고등이하	2,000	8,500	17,000	25,500	34,000	42,500	51,000	
	대학생, 성인	3,000	12,500	25,000	37,500	50,000	62,500	75,000	
독 서 실	아동청소년 및 성인	500	11,000원 (월간 사용료)						
시설 대관	200석 이내	25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						기본 3시간
	300석 이내	33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						
	400석 이내	45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0						
비 고	1. 체육관은 수영장, 탁구장,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을 제외한 체육시설임 2. 시설대관은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의 사용료임 3. 사용료 할증 1) 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의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 (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1. 사용료

사용료 구분	대 상	1 회 사용료	월 사용료 상한(1시간 기준)	
			주1회	주2회
체 육 관	어린이	1,300	5,200	10,400
	초·중·고생	1,800	6,400	12,800
	대학생, 성인	2,500	8,800	17,600
헬 스 장	고등이하	2,000	8,500	17,000
	대학생, 성인	3,000	12,500	25,000
독 서 실	아동청소년	500	11,000원 (월간 사용료)	
시설 대관	200석 이내	25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	
	300석 이내	33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	
	400석 이내	45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0	
비 고	1. 체육관은 수영장, 탁구장,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을 제외한 체육시설임 2. 시설대관은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의 사용료임 3. 사용료 할증 1) 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의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 (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3. 미첨부 사유

-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아동청소년과 홍은하
연 락 처	02-3153-8983